

전주지방법원 2019. 8. 28 선고 2019가단6975 판결 [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

변론 종결 2019. 8. 21

판결 선고 2019. 8. 28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-이 법원 2017가단11805사건에서 2018. 12. 3. 만들어진 조정조서(중 조정조항 제2항)에 따라-〈전주시 덕진구 C 지상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33㎡(이하 편의상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〉에 관하여 (2018. 12. 3.자)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

원고가 2017. 5. 17. 피고를 상대로 -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내세워-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(이 법원 2017가단11805 사건)에서, 2018. 12. 3. 아래와 같은〈조정조항〉이 담긴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.

<조 정 조 항>

1.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33㎡의 매매대금으로 2018. 12. 31.까지 750만원을 지급한다.
2.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. 12. 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위 건물에 있는 대형 가구, 가전제품 등을 수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한다.
3.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독주택(창고) 15.8㎡ 및 목조 단독주택 33㎡(과세대장 기준)에 관한 관리·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.
4. 피고는, 원고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표시변경이나 새로운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보존등기 등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.
5.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6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2.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

가.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"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제공하여야 하는 '표시를 증명하는 서면'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, 또한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에 채권자 D조합의 2015. 4. 8.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(2015카단1087호)이 되어 있으니, 채무를 해결하여 가압류 말소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" 한다고

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(민사조정법 제29조)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. 따라서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
또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인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(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).

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. 12. 3. 원고와 피고사이에 '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 원고에게 제1항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. 12. 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"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정조서가 만들어진 이상, 원고는 단독으로 -위조정조항에 담긴 동시이행의무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면서, 첨부서면을 구비하여-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(등기선례 제7냉10호 등 참조),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기입등기의 말소를 뒤늦게 구하는 듯한 원고의 주장도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어긋나는 주장이므로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(訴求)할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박관근

별지